

자동차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글/김창호(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사례로 알아보는

피해 예방 정보 ⑦

사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해 1년 지나 보험금 받아

사례 A씨는 98년 7월초 오후 11시경 비오는 날 집 앞 공터에서 운전자인 누나가 주차하는 것을 수신호로 안내하고 있었다. 차량의 갑작스러운 후진으로 누나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7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통원 치료중이다. 99년 1월말 A씨는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하다가 보험사로부터 2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제의 받고 소송을 취하였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수차례 미루다가 관할 경찰서와 검찰에 위장 사고 가능성을 의심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결과 A씨가 위장 사고 가능성을 의심 받은 사유는 사고 발생 후 처음에 입원한 병원 응급간호진행기록지에 지붕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자체 조사하다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규모 개인 병원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A씨는 교통 사고 환자라고 하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붕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해 보험사로부터 의심 받게 된 것이다.

보험사와 검찰의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보험금을 1년 지나 받는 결과가 되었다. 지난 7월 14일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천 3백만원 지급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장해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공정한 병원에서 재감정 받아야

사례 K씨는 97년 6월 21일 뒷좌석에 부인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중에 국도에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피하려다 경운기와 부딪혔다. K씨와 부인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경찰서에서 양 당사자가 각자 자기의 손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권유하자 사실 확인 등의 절차 없이 헤어져 K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았다.

얼마 후 보험사측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보상 처리를 요구했다.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고 K씨의 신체 장애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과 교통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사와 민원인이 많이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장애율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다. 보험금을 민원인은 더 많이 타내려고 하고 보험사는 덜 지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한다.

장애율에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양 당사자가 인

정하는 공정한 병원을 지정해 같은 날 같이 병원에
가 재감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전체 조
건으로 감정 결과에 양쪽이 승복해야 한다.

이 사건 역시 보험사와 민원인이 동시에 인정하
는 B병원을 선택하여 재감정을 받았는데 영구 장애
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초
보험사가 제시한 1백80여만원보다 많은 1천2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

경운기 타다 음주 차량에 다친 PM, 1천2백여만원의 보상금 받아

사례

98년 6월 중순경 국도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
어났다. 경운기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P씨는 논두렁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맹인 남편을 수발하며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
던 점술인 P씨는 사고 후, 수차례 병원을 옮겨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P씨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려고 시도하
였으나, 양 당사자간의 보험금 차이가 너무 났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던 P
씨는 변호사 수임료를 제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이 8백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
다. 이에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다.

결과

P씨의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과실상계비율 적용 오류와 위자료 금액 산
정 오류를 찾아내 보험금을 4백만원 정도 상향해 합
의를 유도했다. 경운기의 적재함에는 사람이 탈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기고 경운기 적재함에 P
씨가 승차한 점을 들어 보험사는 20%의 과실이 P
씨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가해 차량의 운전사처럼 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운전인 경우에는 최저치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부분에서 과실
상계비율 적용 오류를 찾아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부
상과 장애 보험금의 위자료 중, 많은 것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3년 한시 장애에 대하여 장애 보험금의 위자료
를 적용해 당초 예상했던 보험금보다 많은 1천2백
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권고,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3년 한시 장애에 대해서는 3년 뒤 장애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재감정을 신청해 다시 보험
금을 지급토록 합의서에 명기토록 유도했다.●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이 되는 몇가지 상식

① 사고의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자동차 보험 사고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술과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착해 목격자
를 확보하거나 1회용 카메라를 준비하여 사고 즉시 전
후좌우에서 사진을 찍는다. 스프레이나 분필로 차량 진
행 상황을 표시하고 차를 주변 한적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즉시 경찰서나 가까운 관공서에 연락하여 교통 사고
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소송
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② 과실상계비율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자동차 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 상계 비율을 놓고 양
당사자가 언쟁을 벌이는 일이 많다. 과실상계비율은 운
전자들이 잘 모르는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사고가 난 자
리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 과실상계
비율을 파악토록 한다.

③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병원을 이용한다

자동차 사고에 의한 의료 판정을 놓고 다툼이 있을 때
는 민원인과 보험사가 서로 인정하는 제3의 진료 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다.